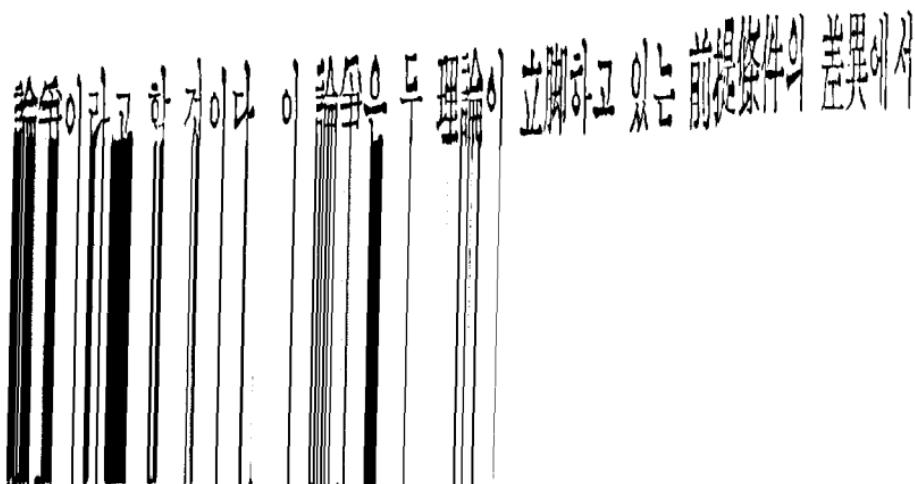


<第三回 研究發表會 發表論文>

適正雇傭과 能力雇傭의 決定原則

金 瑞 凤

A.C. Pigou와 J. M. Keynes 사이의 雇傭決定에 關한 見解의 對立은 世紀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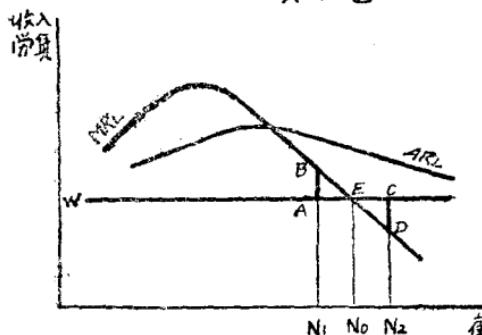
出發하여 어느쪽의 前提가 現實經濟를 解釋하는데妥當性을 많이 가지며 또 政策樹立에 現實的可能性이 많은가에 따라서 終結된 듯하다. 具體적으로는 古典派經濟學者들이 오래동안 前提한 完全競爭市場과 價格機構를 通한 諸經濟量의 自動調節作用을 Pigou가 踏襲하고 Keynes는 否定한 것이다.

現實經濟에 存在하는 諸市場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나 完全競爭狀態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獨占과 寡占의 形成은 市場의 完全競爭性을 마비 시켰으며, 政府의 經濟的干涉은 完全競爭市場의 成立을 障害하는 要因이 된다. 그리고 完全競爭市場은 어떤 變量에 대한 供給의 彈力性이 적어도 1이 되어야 할것을 要件으로 하나 經濟的諸條件 및 非經濟的條件이 그것을 成立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許多하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價格도 資源 및 財貨의 需要-供給을 均衡으로 誘導할 內在的 힘이 弱하게 된 것이다. 假令 經濟的 및 非經濟的 要因이 價格의 吸引力以上으로 強하게 作用하는 경우에는 어떤 價格水準에서 需要와 供給은 不一致할 수 있는 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價格은 需給의 均衡狀態를 表示하는 表示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獨占價格, 協定價格, 契約價格, 政治價格의 形成이나 價格의 硬着

서 労賃을 支拂하는 것이다. 萬若 勞動力에 대한 價格이 그 労動力を 雇傭하는 까닭에 增加할 수 있는 生產高의 貨幣額 보다도 많다고 한다면 企業家는 그 労動力を 經濟的 目的에서는 雇傭할 수 없는 것이다. 企業家는 雇傭하는 労動력이 적어도 労賃과 同等한 혹은 그 以上的 收入을 招來할 것을 期待하여 雇傭한다. 이와같이 企業家는 雇傭을 通하여 利潤을 追求하고 그 利潤이 極大하도록 雇傭量을決定한다.

企業의 極大利潤은 生產에서 일어지는 總收入과 所要된 總費用의 差를 最大하게 하므로써 일어지며 勞動의 限界收益 生產高와 勞賃과의 均等點에서 實現되는 것이다¹⁾. 왜냐하면 勞動의 限界收益은 企業의 收入을 表示하고 労賃은 費用이기 때문이다. 第1圖는 이것을 說明한다.

第1圖



短期考察을 하기 위하여 企業의 規模, 組織, 經營, 施設 및 採擇하고 있는 技術에 變動이 없는 것으로 假定하면 勞動의 限界收益 生產高線과 平均收益 生產高線은 각각 MR_L 와 AR_L 와 같이 雇傭量의 增加에 따라서 增加한 後 減少할 것이다. 이것은 限界生產遞減의 法則이 어느 雇傭水準까지 作用하며 그 水準을

넘으면 限界生產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労賃은 契約價格인 까닭에 平均勞賃과 限界勞賃이 區別될 수 없다. 그러므로 W 水準에 있다고 한다면 그 企業의 極大利潤은 E 點에서 實現하고 雇傭量은 N_0 水準에서 決定하게 된다. 各雇傭水準에 對應하는 限界收益 生產高의 總和는 企業의 總收入이며 限界勞賃에 雇傭量을 乘하면 여기에서는 總費用이 된다. 이 兩者的 差는 雇傭量이 N_0 인 경우에 最大의 差를 이루기 때문이다. 萬若 雇傭量을 N_1 에서 決定하거나 N_2 에서 決定하면 그 企業은 過少雇傭 혹은 過剩雇傭으로 各各 ABE 또는 CDE의 損失을招來하여 極大利潤을 實現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수 있다. 즉 個個 企業에 있어서는 労賃을 낮게 하거나 (W') 또는 勞動의 限界收益 生產高를 높으게 하거나 (MR'_L) 혹은 두 가지 모두 併行하는 경우에는 勞動力需要는 增大하여 雇傭量은 N_1 , N_2 , N_3 로 될

1) 嚴密히 말하면 生產物의 限界收益과 限界費用이 一致하는 均衡點에서 企業의 總利潤은 極大하다. 限界費用에 反映되는 것은 労賃以外에 여러가지 固定費用과 可變費用이 있으나 여기서는 問題를 單純화하기 위하여 省略한다.

다). 第 2 圖는 이것을 表示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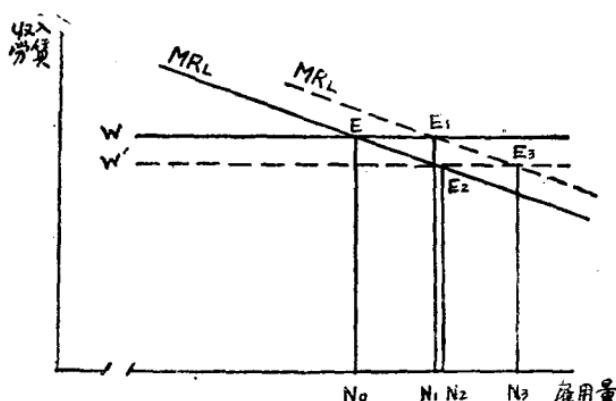
이 結論은 非現實的인 假定을 暗默的으로前提하고 있다. 즉 어떤 雇傭水準에 있어서나 生產된 生產物

이 一定한 價格으로 모두 販賣될 수 있다는 것 이다. 勞動의 限界收益 生產高는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交換過程을 經由 하여 企業家에 回收되는 收入을 意味하는 것이다. 어언 雇傭量에서 生產된 生產物이 一定한 價格에 의하여 全部 需要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特定

水準의 雇傭量以內의 生產高 만이 需要 곧 販賣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그 生產物에 대 한 供給能力과 需要能力과의 比較에 의하여 決定될 問題이다. 具體的으로는 企業規模와 市場의 크기에 依存한다. 假令 價格이 一定한 경우에 供給이 需要에 따르지 못 한다고 하면 어떤 雇傭量에 있어서나 勞動의 限界生產高는 勞動의 限界收益生產高로서 實現될 것이다. 反對의 경우에는 어느 特定水準의 雇傭範圍內에서 만이 勞動의 限界生產高는 限界收益生產高로 轉換될 수 있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個個 企業의 極大利潤의 均衡點은 一律的으로 말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區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i) 生產物의 供給이 어떤 價格水準下에서 需要와一致하거나 혹은 供給이 需要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不足한 경우는 그 企業의 極大利潤은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労賃이 一致하는 均衡點에서 이루어진다. (ii) 反對로 生產物의 供給이 需要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一定한 價格에서 勞動의 限界生產高로 實現할 수 있는 供給과 需要의 均衡點에서 極大利潤은 이루어진다. 그 理由는 過剩供給分은 利潤을 實現할 수 없

第 2 圖



2) 労賃引下 雇傭增大의 效果를 招來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前提을 必要要件으로 한다. 첫째 労賃引下는 그만큼 限界生產費를 引下한다. 두째 生產物에 대 한 需要是 労賃引下와 關係 없다. 労賃引下와 限界費用引下와의 關係는 非勞賃費用이 費用에 占하는 程度에 依存하며, 두째의前提是 Keynes의 費用·所得均等의 法則에서 論難되고 있다.

R.C.O. Matthews, "The Effect of Wage-cut on Employment," Economic Journal, Sept. 1951 參照。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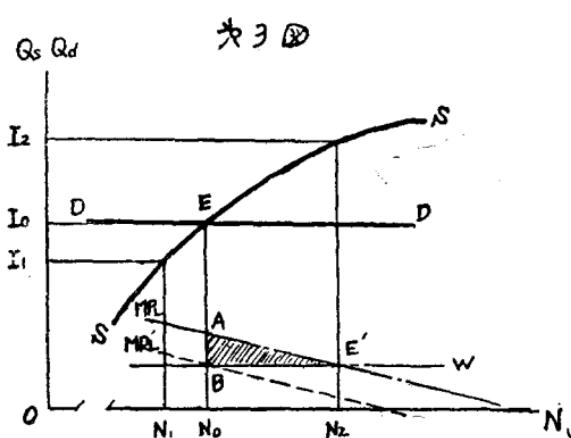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利潤極大化의 原則에서 雇傭量의 決定問題도 역시 두 가지 경우로 区分하여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의 供給能力이 販賣市場의 크기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적다고 한다면 企業家는 그 企業의 規模가 許容할 수 있는 水準에서 生產하고 또 勞動力を 雇傭할 것이다. 그리고 反對의 경우에는 企業家는 企業規模가 許容하는 能力以下의 어떤 水準에서 雇傭하지 않을 수 없다. 前者の 경우를 能力雇傭(capacity employment)이라고 하며 後者の 경우를 適正雇傭(optimum employment)이라고 한다³⁾.

2. 適正雇傭의 決定

生產物에 대한 供給과 需要의 意思가 서로 獨立的으로 決定되는 自由經濟에 있어서는 適正雇傭과 能力雇傭은 서로 併存한다. 生產을 擔當하는 企業家들이 利潤追求에 대하여 綿密한 計劃을樹立하지만 그것은 孤立的인 것이며, 또 社會全體의 需給計劃이 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結果的으로는 過剩生產 혹은 過少生產을 하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이것은 諸企業家가 能力雇傭으로 雇傭할 수 없는 理由의 하나이다. 그리고 두께의 理由는 需要量이 一定하지 않고 變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需要에 季節的變動性을 지니고 있는 企業에서는 언제나 能力雇傭을 持續할 수는 없으며, 適正水準으로 雇傭을 減少하고, 또 그에서 能力水準으로 擴大

하는 등은 不可避한 實事이다. 그러면 두 類型의 雇傭을 決定하는 原則을 考察한다. 이것을 第3圖와 第4圖로써 說明한다. 먼저 第3圖의 適正雇傭의 決定原則부터 시작한다.

適正雇傭을 하는 경우는 既述한 바와 같이 生產物의 供給能力에 比하여 그 需要能力이 不足한 경우에 擇하



3) 能力雇傭은 Lee 또는 J. Robinson 이 말하는 極大雇傭(maximum level of employment)와는 그概念이 다른 것을 註記한다.

A. Lee, "Wage Determination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 1951, p. 145; J. 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 Macmillan, 1933), p. 294 參照.

는 雇傭狀態이며, 需要不足이 招來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縱軸으로 貨幣單位로 表示한 供給量(Q_s)와 需要量(Q_d)과 橫軸으로 雇傭量(N)을 表示하고 그위에 勞動의 限界生產高(MPL)와 勞賃(W)를 假想線으로 나타내었다. 一定한 規模의 企業에 있어서는 雇傭量의 增加에 대하여 勞動의 限界生產高는漸次 減少하는 까닭에 生產物의 供給曲線은 漸次 上向傾斜度를 失去한다.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零이 되면 以上 더 上昇하지 못한다. 그 理由는 限界勞動者의 勞動力은 生產에 奇異하는 바 全然 없게 되기 때문이다. SS는 供給曲線이며 이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MPL 가 零이 되는 水準은 그 企業規模가 許容하는 生產의 上限界가 된다. 이것과는 다르게 需要線 DD 는 그 企業의 雇傭量과는 無關係하기 때문에 水平線으로 나타난다⁴⁾. 勞賃도 第1圖에서 既述한 것과 같은 理由에서 水平線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우에 企業은 雇傭量을 供給과 需要가 一致하는 水準에서決定할 것이다. 더욱 具體的으로는 供給된 生產物이 모두 需要될 수 있을 것으로期待되는 水準에서 雇傭하게 된다. 그 雇傭量에서 最大의 利潤이 實現될 것으로期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水準은 반드시 勞賃과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一致하는 點과 合致한다고 말할 根據는 없는 것이다⁵⁾.

이 雇傭量은 그 企業에 있어서 能力雇傭은勿論 아니다. 왜냐하면 企業의 規模가 許容하는 範圍에서 極大 利潤을 形成할 수 있는 雇傭水準은 N_2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N_2 에서 雇傭하는 것 보다 ABE' 만큼의 利潤을 抛棄하여, 能力以下로 雇傭한 것이다. 이것은 生產物이 商品의 運命을 버서나지 못하는 限 遷할 수 없는 事實이다. 더욱 詳論하기 위하여 例를 든다.

萬若 第3圖와 같은 경우에 한 企業가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勞賃이 一致하는 能力雇傭水準 N_2 에서 勞動力を 雇傭하고 生產하면 그 總生產高는 OI_2 이다. 그러나 需要될 것으로期待하는 需要量은 OI_0 이기 때문에 I_0I_2 의 滯荷는 遷할 수 없을 것이다.

4) 總體經濟의 경우는 總需要가 그 經濟의 雇傭水準의 函數關係에 있기 때문에 雇傭量의增加에 따라서 總需要線은 上昇한다.

5) 이 斷定을 總體經濟에 適用하면 Keynes의 “勞賃은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一致한다”라는 古典派雇傭理論 第一公準과는 極히 對照의이다. 이 相對는 Keynes가 “萬若競爭과 市場이 不完全하다면” 労賃과 勞動의 限界生產高의 一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條件을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이 Keynes의 前提條件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價格의 自由變動을 前提하고 있으며 筆者が 내린 斷定은 一定한 價格을 前提하고 있다. 萬若 그 假定을 없애면 第3圖의 E'均衡點에서 있을 수 있는 過剩供給 I_0I_2 는 價格을 引下하게 한다. 따라서 貨幣單位로 表示한 勞動의 限界生產高線은 MPL 에서 MPL' 에로 移動하게 하고 W 가 MPL' 와 均衡하는 새均衡點이 E生產水準에서 形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斷定과 第1公準과는 內容에 있어서 全然 相對하는 바 없다.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Harcourt, 1936), p. 5

것이다. 企業의 生產物은 그 所有者에 대하여는 何等의 使用價值가 없으며 不所有者에 使用價值가 있으므로 結局은 交換되어야 할 商品인 것이다⁶⁾. 그러므로 滯荷는 企業家에 있어서 無用한 것이며, 企業家 역시 滯荷가 없을 程度의 水準에서 生產 및 雇傭하려고 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反對로 N_1 水準에서 雇傭한다고 하면 I_1I_0 의 過少供給을 하는 同時에 一面으로는 N_1N_2 를 雇傭할 수 있을 程度의 施設이 休息狀態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需要의 側面에서나 雇傭面에서 許容할 수 없는 過少雇傭을 하는 셈이다.

위의 두例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企業의 總利潤을 最大限으로 實現하기 위해서는 雇傭能力이 許容하는 雇傭量 N_2 에서나 需要量을 滿足시킬 수 없는 雇傭量 N_1 에서 雇傭하지 않고 生產物의 需要와 供給이 合致하는 均衡點 E 에서 N_0 水準으로 雇傭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需要能力에 供給能力을 調節하여 雇傭하는 것이다. 均衡點 E 에서는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勞賃을 上廻하고 있는 까닭에 極大利潤의 均衡點이 아닌 것은 이미 指摘하였다. 그러나 均衡點 E 에서 經濟事情 特히 需要가 許容하는 限度內에서 最大限의 利潤을 期待한다. 要컨데, 適正雇傭을 決定하는 原則은 企業家의 利潤極大化 原則에서 結果되는 것이다. 그 決定要因은 生產物에 대한 期待需要量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能力雇傭의 決定

適正雇傭과는 對照的으로 能力雇傭은 生產物에 대한 供給能力보다도 需要能力이 큰 경우에 이루어지는 雇傭狀態이며, 第4圖는 이것을 說明한 것이다. 圖表上의 符號에 대하여는 第3圖와 同一하므로 說明을 要치 않으며, 단지 需要水準이 供給의 上限界點을 上廻하고 있는 點이 다르다. 附記할 것은 다른 事情이 同一한 두 企業을 比較한다면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勞賃의 均等點은 企業의 規模에 따라서 相違한 것이다. 즉 企業規模가 클수록 極大利潤點은 右側에 있고, 높은 雇傭量을 雇傭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供給曲線 역시 높은 水準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企業規模을 擴大한다고 假定하면 供給曲線은 上方으로 그리고 MP_L 와 W 의 均等點은 右側으로 각각 移動할 수 있다고 하는것을 銘念하여야 한다.

第4圖와 같이 企業의 生產高가 期待되는 需要를 滿足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雇傭量은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勞賃이一致하는 均衡點 E 에서 이루어지며 그 量은 N_0 다. 이 경우는 供給曲線의 上限界에 있어서도 需要是 그것을 超過하고 있으며 設令 上限界에서 需要가 滿足된다고 하더라도 그 生產水準의 雇傭量인 N_2 를 雇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N_0 水準을 넘어서는 雇傭增加에 따라서 勞動의

6) K. Marx, Capital (New York: Modern Library), p. 97

限界生産高는 勞賃以下로 低落하는 까닭에 結局 N_2 雇傭量에서는 AN_2E 만큼의 損失을 免할 수 없기 때문이다. 萬若 勞動力이 自由財와 같이 無報酬로 일어진다고 假定한다면 供給의 上限界

點에서 生產할 것은勿論이다

이와같이 그 企業規模에 대하

여 雇傭能力은 N_0 水準인 셈

이다. N_0 水準以下의 雇傭量

으로는 極大利潤을 追求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供給不足은

더우 甚하게 된다. 따라서 企

業家는 N_0 水準에서 I_0I_1 만큼

의 供給不足를 認識하게 된다

I_0I_1 만큼의 供給不足은 結

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現象을 誘發할 要因이 된다. 즉 生產物의 價格이 謂貴하

여 勞動의 限界生産高가 價格謂貴 以前보다도 높은 勞動의 限界收益生産高로 實

現되거나 아니면 企業의 規模를 擴張하여 供給曲線을 SS 에서 SS' 로 上昇하게 하

고 따라서 MPL 도 MPL' 로 上昇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雇傭效果는 同

一하며, 利潤極大的 均衡點이 E 에서 E' 로 移動하고 N_0N_1 의 雇傭增大를 招來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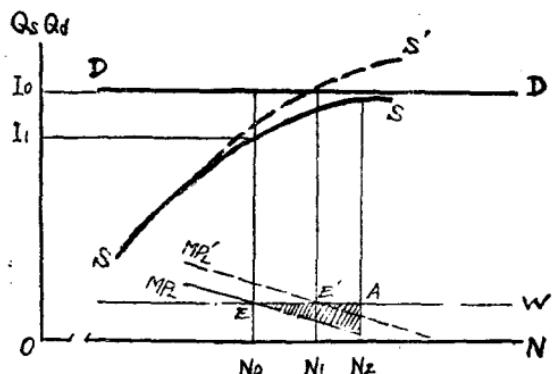
는 것이다. 그 理由는 價格上昇에 의하여 勞動의 限界生産高가 더 높은 限界收益

生産高로 實現되는 것은 一定한 價格下에서 勞動의 限界生産高가 MPL 에서 MPL'

로 上昇하는 것과 꼭 같은 理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價格이 需要供給의 均衡을 나타내는 表示器가 될 수 없다고 하는前提를 序頭에서 前提하고 있는 까닭에, 價格上昇으로 因한 雇傭效果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企業規模의 擴大에 依하여 供給增加와 雇傭增加를 期待하게 된다 企業의 規模擴大問題는 여러가지 새로운 問題에 逢着하게 되는 것이다. 즉 企業意慾, 企業能力, 資金動員, 原料 등등의 諸條件이 具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것도 역시 實現不可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雇傭增加策은 不幸하게도 勞賃을 引下하니 雇傭增加의 效果는 나타나는 것이다. 第4圖에서 假令 勞賃水準 W 를 引下한다고 하면 勞賃과 勞動의 限界生産高가 均衡하는 E 點은 右側으로 移動하고 雇傭能力은 擴大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第2圖에서 勞賃引下가 招來하는 雇傭增大效果와 何等 다를 바 없다^{6a)}.

以上 要約하면 能力雇傭은 適正雇傭의 경우와도 같이 利潤極大化原則에 의하여



第4圖

6a) O. Lange 가 말하는 擴張效果(expansion effect)다. 李廷煥譯 價格伸縮性과 雇傭(서울:一潮閣, 1956), 第3章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勞資의 均衡點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左右하는 것은 勞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經濟的先進國의 雇傭問題

個個 企業의 勞動力需要에 대한 두 가지 雇傭原則은 經濟的先進國과 後進國의 雇傭問題를 解釋하는데 援用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理由를 들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自由經濟制度를 擇하고 있는 各國民經濟는 모두 辭지 않는 公經濟部門을 包含하고 있으나 私經濟部門이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까닭에 利潤追求의 動機에 의하여 總體經濟는 左右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雇傭水準에 絶對의 主導權은 私經濟部門의 利潤追求의 動機에 의하여 掌握되고 있으며, 公經濟部門의 經濟活動은 補完的 position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自由經濟制度下의 個個 國民經濟는 각各 獨特한 經濟的 隘路를 內包하고 있으나 窮極의인 것은 需要不足과 供給不足의 두 類型으로 類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가지理由를 考慮하면 總體經濟의 雇傭問題도 역시 供給能力에 比하여 需要能力이 不足한 企業의 경 우와 供給이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는 그들과 何等 다를 바 없는 것이다.

企業의 경우에 指摘한 두 가지 雇傭原則 가운데서 어느것을 總體經濟의 雇傭原則으로 하는가의 問題는 各國民經濟를 總體의으로 把握하여 總供給과 總需要의潛在的能力의 比較에서 決定될 性質의 것이기 때문에 結局 그 國民經濟의 發展程度에 依據한다. 萬若 어떤 國民經濟의 發展程度가 高度한 까닭에 「豐饒裡의 貧困」을 內包하는 경우에는 雇用水準은 總需要의 水準에 의하여 決定되는 適正雇傭의 水準인 것이다. 反對로 諸後進經濟와 같이 經濟發展의 基盤이 「貧困가운데 窮乏」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 하는 經濟는 能力水準에서 雇傭하여 生產할 것이며 勞資水準은 雇傭水準을 左右하는 重要한 關鍵이 되는 것이다. 먼저 先進經濟의 경우 부터 考察한다.

經濟的先進國의 經濟的 隘路는 總需要의 不足에 있다고 하는 것은 Keynes 및 Keynesian에 의하여 主張되고 있다. “萬若 우리들의 貧困이 凶年이나 地震에서 起起한다면——즉 財貨生產에 必要한 物資와 資源이 不足하다고 한다면 勸勉, 節慾, 發明 以外에 다른 繁榮의 方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苦楚는 全然別途의 것이다.”⁷⁾고 Keynes가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의 未開發이나 經濟의 基礎의 破壞가 招來하는 結果는 아니며, 經濟의 高度한 發展 그 自體가 招來한 經濟의 痘弊인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能力雇傭水準에서 雇傭한다고 하면 非自發의 失業이 存在하지 않는 完全雇傭의 狀態가 이루어 질수 있는 經濟를 말한다⁸⁾. 그 完全雇傭

7) J. M. Keynes, *The Means to Prosperity* (New York: Harcourt, 1933), p. 3

水準에 있어서는 總所得과 總消費支出과의 差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私企業의 投資로서는 그 差를 充足시킬 수 없는 데서 招來되는 景氣後退 및 長期沈滯의 傾向을 意味하고 있다⁸⁾.

이와 같은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그 社會의 極大利潤은 그 經濟의 供給能力 곧 生產能力이 許容하는 水準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雇傭과 生產水準은 個個企業의 경우와 같이 總供給과 期待되는 總需要와의 均衡點에서 決定되며, 雇傭을 左右하는 主要要因은 總需要의 크기이다.

總供給과 總需要의 均衡點은 第3圖의 경우와 같이勿論, 勞賃과 勞動의 限界生產高가一致하는 點은 아니다. 勞賃이 勞動의 限界生產高를 下廻하고 있는 까닭에 能力雇傭이 아니며 適正雇傭水準인 것이다. 이 雇傭水準에서 그 經濟社會는 經濟的生產規模가 許容하는 極大利潤以下의 利潤을 取得할 수 있다. 그러나 能力雇傭水準에서는 滯荷가 累積할 것이므로, 市場이 許容하는 極大利潤을 獲得하는 것이다. 그리고, 雇傭決定에 勞賃水準이 아무런 機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第3圖로써 能히 침작할 수 있는 것이다.

Keynes는 이 點에서 有効需要의 原理를 主張하고 雇傭과 生產水準은 需要에 의하여 吸引된다고 한 것이다. 要컨대 “[生產組織, 設備 및 技術이 一定하다고 假定하면] 需要是 雇傭을 決定하고 雇傭은 [勞動의] 限界生產高를 決定하는 것이며 다른 어떤迂回的過程에 의하지 않는다.”¹⁰⁾

適正雇傭水準에서 雇傭하고 있는 經濟社會에서는 既述한 바와 같이 勞賃이 雇傭決定의 要因이 될 수 없는 까닭에 勞賃의 引下 혹은 勞動力에 대한 價格의 自動調節作用을 妨害하는 要因을 除去하여서 雇傭增大를 主張하는 Pigou式失業對策은¹¹⁾ 크게 誤謬를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容易하게 알 수 있다. 勞賃은 適正雇傭雇傭永準決定에 關係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雇傭水準을 左右하는 總需要의 水準을 引下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雇傭增大策은 세 가지 方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첫째 公共需要의 增大에 의한 總需要의 擴張 두째 財政 및 貨幣政策에 의한 個個企業의 投資誘發과 그에 따른 總需要의 增大 세째 所得分布修正에 의한 消費需要擴大와 그에 따른 總需要의 增加등이다¹²⁾.

8) D. Patinkin, "Unemployment and Keynesian Supply Function," Economic Journal, Sept. 1949, pp. 369, 371

9) D. Dillard, The Economics of John Maynard Keynes (Englewood-Ciffs: Prentice-Hall, 1948), p. 102

10) A.H. Hansen, Guide to Keynes (New York: McGraw-Hill, 1953), p. 22

11) A.C. Pigou, Unemployment (New York: Henry Holt, 1913), pp. 242-5; Theory of Unemployment (London: Macmillan, 1933), p. 252; Lapses from Full Employment (New York: Henry Holt, 1945), pp. 9, 20, 30

12) M. Kalecki, "Three Ways to Full Employment," in The Economics of

5. 後進經濟의 경우

經濟的先進國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後進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經濟的 難題은 生產物의 供給不足 곧 生產能力의 不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大部分의 경우는 勞動力を 除外한 諸生產要素의 缺乏에서 招來되고 있다. 植民地的 摻取에 起因하는 歷史的貧困의 惡循環과 現在時點에서 縱橫으로支配하는 貯蓄不足 및 投資不足의 惡循環이 서로 영들어져 經濟發展의 要因을 抑壓하고 經濟를 未開發狀態로 放置하고 있는 것이 그 理由이다.

經濟的後進國에 있어서 供給不足의 例는 여러 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通貨量增加가 物價上昇을 隨伴하는 것은 古典的 貨幣數量說이 適用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¹³⁾. 이것은 通貨量增加에 대한 生產物의 供給彈力性은 零이며, 需要의 弹力性은 1인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리고 後進經濟에서는 公共投資가往往 物價騰貴를 隨伴하는 것은 投資의 乘數效果가 貨幣所得面에만 나타나고 生產高의 增加를 隨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亦是 總需要의 增加에 대하여 總供給의 弹力性이 零이거나 혹은 1以下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後進社會의 經濟는 마치 需要量이 供給量을 超過한다고 하는 것을 哈連히 알면서도 二個需要를 滿足시킬 程度로 企業規模을 擴大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도 같은 것이다. 企業規模가 그 企業家의 企業意慾不足, 力量不足 혹은 資金不足 때문에 不可能한 것과 같이 後進經濟에서 總供給이 總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채로 있는 것은 供給曲線을 上昇시키는데 必要한 諸資源이 缺如하고 있거나, 諸資源이 生產過程에 投入될 條件이 缺乏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經濟的 後進國에 있어서는 極히近代化한 產業部門이나 企業의 경우를 例外하고는 供給된 生產物은 모두 需要되는 것이며 販路의 阻路는 있을 수 없

Full Employment, edited by Kalecki (Oxford; 1946), p. 39

13) 韓國에 있어서 通貨量과 物價指數의 關係는 아래와 같다.

年 度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通貨量 (10億圓)	14.3	30.3	58.1	93.5	120.9	145.2	192.6	209.9	219.1
物價指數 (1955=100)	28.4	43.3	59.4	100	122.9	151.7	146.7	152.8	165.5

(資料: 한국은행조사부, 조사월보 제15권 제2호 통계1)

이것을 最少自乘法으로 整理하면 物價指數(P)와 通貨量(M)과의 關係를 兩者の 相關係數(r)는 각각 다음과 같다.

$$P = 75.5 + 0.66M$$

$$r = 0.97$$

14) 金瑞鳳, “過剩勞動力의 分析”經濟學報(東亞大學校 經濟學會, 1961), 第2輯, 18—19面參照

는 것이다. 즉 總體的으로는 Say 의 市場法則이 適用되는 것이다. R. Nurkse 는 이것을 指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未開發地域에 있어서는一般的으로 過剩貯蓄에서 起起하는 deflationary gap는 存在하지 않는다. 生產은 스스로 需要를 創出하고 市場의 크기는 生產의 크기에 依存한다. 結局 市場은 全般의 生產性의 擴大量 通하여서 만이 커질수 있다.”¹⁵⁾

供給된 生產物의 版路에 隘路가 없는 경우에는 第4圖의 企業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그 經濟社會의 能力水準에서 生產과 雇傭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總體의 規模의 能力雇傭水準에서 이루어진 生產高가 모두 需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雇傭水準을 決定하는 原則은 勞動의 限界生產高와 勞賃이 一致하는 利潤의 極大點이며 雇傭水準을 左右하는 要因은 勞賃이다. 따라서 後進經濟에 있어서는 勞賃水準의 引下는 雇傭增大의 効果를 招來한다고 하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위의 結論은 Pigou의 勞賃引下의 雇傭効果와 類似한 것이다. 그러나 結論에 到達하는 過程은 判異하다.

Pigou에 의하면 失業이 發生하는 理由는 勞賃이 國體契約에 의하여 不當한 水準으로 높아져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萬若 어떤 勞動者에 대하여 여러가지 經濟의 힘의 自由로운 作用에 의하여 決定되는 勞賃水準以上으로 높은 水準의 人爲의 勞賃을 支拂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失業은 發生한 것이다”고 한다¹⁶⁾.

萬若 人爲의으로 決定된 높은 水準의 勞賃이 存在하지 않는 同時に 勞賃은 勞動力의 供給과 需要의 均衡價格으로서 自由自在로 變動할 수 있다고 한다면 失業은 存在하지 않는다. 萬若 失業狀態의 勞動력이 있다고 한다면 季節的失業, 摩擦失業 그리고 自發的失業인 것이다. 假令 非自發的失業이 包含되어 있다고 한다면 勞動력을 供給하게 되고 勞賃은 低落하여 雇傭을 增加하여도 勞動의 限界生產高가 勞賃을 支拂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近來에 이르기까지 貨幣勞賃率의 全面的인 引下는 雇傭量을……增加할 수 있다고 期待하는데 대하여 疑問을 가진 學者는 누구도 없었다”고 하여 勞賃引下를 雇傭增加의 核心的手段으로 看做한다¹⁷⁾.

Pigou의 이와 같은 結論은 諸市場을 完全競爭狀態로 前提하고 諸經濟量의 供給

15)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9

16) Pigou, Unemployment, p. 242

17) A.C. Pigou, "Real and Money Wage Rates in Relation to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Sept. 1937, p. 405

과需要가各各의價格에 의하여均衡하는 것으로把握하는 까닭에 얻어지는結論이다. 그것은 어떤水準의生產高도交換過程에 隘路가存在할 수 없다고 하는點에서能力雇傭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論述한能力雇傭의 경우에生產高는 모두需要되는 것으로取扱한 것은總體經濟의規模가작으며發展하지못한데서求하였으며決코完全競爭市場에서價格機構에의한自動調節作用에서말하는 것은아니다.

勞貨引下의雇傭增大效果를否認하는 Keynes는生產物의需要側面의隘路에서捕捉한 것이다. 그에의하면全面的인貨幣勞貨의引下는 다음과같은 두경우에局限하여雇傭에有利한影響을미친다고한다. 즉(i)引下한貨幣勞貨이他國의勞貨水準에比하여낮을경우에는輸出증대의原因이되어그것은投資를增加하게하는까닭에雇傭을刺戟한다¹⁸⁾. (ii)貨幣勞貨의引下는貨幣所得을低落시키고去來및豫備的動機에서오는貨幣需要를引下하는까닭에많은貨幣가投機需要를充足시킬수있다. 그러므로利子率低落의要因이되어따라서investment를刺戟하여雇傭量을증大하는效果를낳는다¹⁹⁾. 그러나이와같은效果는다른條件이一定하다는假定위에서만이妥當하다고하여勞貨引下의雇傭效果를一貫하여否認한다. 그의主張에의하면勞貨引下는生產費用과貨幣所得의低落을招來한다. 그러므로物價低落과總需要의低落을同時에誘發하는까닭에雇傭增大의要因이될수없다고한다²⁰⁾.

이와같은Keynes의主張은適正雇傭의경우에妥當할것이며ability雇傭水準에있는後進國經濟에는適用될수없는것이다. 왜냐하면後進國經濟는大體로inflationary gap를內包하고있을뿐만아니라需要水準自體가生存水準의消費需要와investment需要로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勞貨引下가貨幣所得의減少를招來한다고하더라도消費需要水準이크게低落할수는없을것이다. 이것을뒷받침하여限界消費性向은1보다적다는것은널리受諾되고있다. 그리고勞貨引下가investment需要를reduc 할理由는없다. 그러므로總需要水準이大幅低落하여ability雇傭水準에서는deflationary gap가發生할根據는없는것이다. 즉勞貨引下는ability雇傭의決定原則을顛覆시킬條件를만들지못하는까닭에勞貨引下는雇傭量을增加시킬수있는것이다.

여기까지推論한바에의하면ability雇傭의경우에雇傭增大策은다음세가지인것을짐작할수있다. 첫째總體經濟의規模을擴大하는것이다. 이것은第4圖에서供給曲線SS를SS'로上昇시키는것과같은것이다. 諸生產要素을生產過

18) Keynes, General Theory, p. 263

19) ibid., p. 263

20) ibid., chapt. 19

程에 動員 및 投下함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貯蓄과 投資를 要件으로 하는 實物資本의 形成에 있다. 두째 勞動의 限界 生產高를 上昇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技術 또는 勞動의 能率上昇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技術失業形成的 條件은 排除되어야 한다. 세째는 勞賃引下도 不幸한 結果이기는 하지만 雇傭增大策의 한 方策인 것이다. 위의 세가지 方途는 모두 利潤極大點 곧 雇傭의 能力水準을 右側으로 擴張시킬 수 있는 것이다. (晉)